

K씨푸드 수출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약정서

제1조(목적)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이하 “aT”라 한다)와 (○○기
업)(이하 “참여기업”이라 한다)간에 수출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시행에 필요
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제2조(참여기업의 협조와 준수) “참여기업”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수출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운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협조·준수한다.

1. “참여기업”은 「K씨푸드 수출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이하 “사업”이
라 한다)을 성실하게 운영한다.
2. “참여기업”은 “aT”가 운영·지원하는 사업관련 교육을 수출 코디
네이터가 교육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참여기업”은 수출 코디네이터에 대해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근로기준법 및 최저 임금법 등을 준수해야 한다.
4. “aT”가 사업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 “참여기업”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가. 코디네이터의 활동결과 등에 관한 정기 또는 수시 보고(“aT”
또는 “aT지정업체”)

5. “참여기업”은 성희롱 및 갑질 예방 등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6. 사업기간 중 수출 코디네이터 활동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금 지급 등) 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지원기간) '21.6.1~11.30 (총 6개월)
2. (지원대상 및 지급액) “aT”는 지원기간 중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을
정하여 수출 코디네이터를 채용한 “참여기업”에게 1인당 월급여 202만원

(4대보험 및 세금 포함)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지원금으로 지급하며,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참여기업” 자부담으로 한다. 이때, 월급여 외에 발생하는 출장비, 법정제수당(연장야간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 휴가수당) 등은 “참여기업”이 부담한다.

3. (지원금 일할계산) 수출 코디네이터가 월중 입사 또는 퇴사 시 지원금은 월급여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4. (지급방법) “참여기업”은 “aT” 혹은 “aT지정업체”에서 요청한 날까지 매월 제출서류를 제출해야하며, “aT”는 매월 제출서류 마감일로부터 15 영업일 이내에 “참여기업”의 사업주 명의 은행 계좌로 지급한다.
5. (제출서류) “참여기업”은 월별 사업결과보고서, 임금이체내역, 4대보험 가입 내역 등을 매월 제출하여야 한다.(“aT” 또는 “aT지정업체”)
6. (유의사항) “참여기업”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수출 코디네이터 근로 이후라도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 가. 모집일 기준으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등에 참여중인 경우
 - 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경우

제4조(사업의 중단 등) “참여기업”은 사업 운영기간 종료이전에 수출 코디네이터에 관한 아래의 근로계약 중도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내용을 즉시 “aT”에 통보하여야 한다.

- 가. 국가 비상사태 및 천재지변 등으로 약정 의무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 나. 참여기업의 폐업, 휴업 등으로 사업운영을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제5조(지도·점검에 따른 조치) ① “aT”는 “참여기업”의 사업참여가 적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 진행 또는 이행여부를 지도·점검할 수 있다. ② “aT”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점검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참여기업”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 “aT”는 “참여기업”에 지원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으며 차년도 사업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 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 신청한 자
- 나. 사업 시행과 관련된 보고, 관계 서류의 제출 또는 점검 시 불응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할 경우 및 거짓으로 적은 문서를 제출한 자
- 다.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방적으로 중도포기한 경우

제6조(국고보조금 집행 및 사후관리) ①수출 코디네이터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 및 사업시행계획 등을 위반하여 국고보조금 부당수령 등이 발생한 때에는 “aT”에서 해당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참여기업”은 자료 제출 등 감사업무에 협조해야 한다. ②「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 사업계획 등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aT”가 사법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할 수 있다.

본 약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aT”, “참여기업”이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1년 00월 00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00기업

사장 김 춘 진 (인)

대표이사 홍 길 동 (인)